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  
· 규칙심의회, 규제개혁 위원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1년 4월 8일

서울특별시 중구청



##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코로나 19 장기화로 인하여 지역사회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특히 정부의 사회적거리두기 등 재난피해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심대하고 매출 급감을 견디지 못해 폐업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폐업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에 대한 지원 규정

#### 나.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

- 임의·조례위원회인 '소상공인지원위원회'를 의무설치 위원회인 '중소기업육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통합 운영

### 3. 의견제출

이 조례 및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4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참조 : 전통시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서 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ysyu@junggu.seoul.kr](mailto:ysyu@junggu.seoul.kr)

2)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 17 중구청 전통시장과

3) 전 화 : 02-3396-5042 (팩스 : 02-3396-8680)

붙임 :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 제10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업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에 따른 지원은 2020년 3월 22일 이후에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조의2(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u></p> <p>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민행동지침, 행정조치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폐업 소상공인은 종전 사업장이 중구에 소재한 경우로 한정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절차,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p>
<u>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하거나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u>	<p style="text-align: center;"><u>제10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u></p> <p>-----</p> <p>-----</p> <p>-----</p> <p>-----.</p>

1. ~ 4. (생략)

<신설>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

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당 전문가, 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경우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여 연임할 수 있다.

<삭제>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삭 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삭 제>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상공인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